| 2021. 5. 27.(목) 10:00 |
| --- |
| 제2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br>제 2 차 본회의 |

# 검 토 보 고 서

## 달 성 군 의 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7일

###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서도원 의원, 신동윤 의원, 도일용 의원

###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청년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9조)

### 5.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Ⅱ.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 대구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 제19조 청년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의(안 제2조)를 달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시 및 대구시의 다른 구에서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지역내 동일한 기준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기준 연령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이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 · 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에는 군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청년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년 · 일자리 · 복지 · 주거 · 고용 · 문화예술 · 교육 · 건강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들의 소통·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계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청년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계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9.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추진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2. 해외취업 정보제공
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5. 문화 활동 사업
6. 체육 활동 사업
7. 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청년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청년의 군정 등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7일

###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신동윤 의원

### 3. 제안사유

○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하고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계획 수립 및 아동학대 신고,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예산지원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하고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8조 계획 수립 및 아동학대 신고,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달성군 내 아동의 학대를 근절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안 제7조)를 의무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운영(안 제9조, 제10조)하여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안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제10조(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내용 신설(2021. 6. 1. 시행) 으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별표)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 Ⅱ.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달성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사항 추가

※ 위임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되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신고된 사무는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 법령 |
|---|---|---|---|
| <신 설> | | <신 설> | |

## 개 정 안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 법령 |
|---|---|---|---|
| 토지정보과 | 1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 |
|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20.12.22. 공포, ’ 21. 6.2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 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6조제2항)

-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안건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

### 5.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

## Ⅱ.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공직자윤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기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안건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인으로 구성하되” 를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 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 을 “2명” 으로 “달성군의회 위원” 을 “달성군의회 의원”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3인” 을 “5명”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2인” 을 “2명”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임원과” 를 “임직원과” 로 한다.
제6조제2항 “재적위원” 을 “출석위원”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원은” 을 “위원은” 으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을 “재적위원수의 계산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10조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2조(구성) ①----------**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
|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
| 2. **2인**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2. **2명** ----------**달성군의회 의원**----------. |
| ② (생 략)<br>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br>1. ----------**5명**----------. |
|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 **2명** ----------. |
| 제3조(기능) ①(생 략)<br>1·2·3·4·②·1·2 (생 략) | 제3조(기능) ①(현행과 같음)<br>1·2·3·4·②·1·2 (현행과 같음) |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 3.----------**임직원과**--------- |

| | |
|---|---|
| 관한 사항 |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출석위원** ----------. |
| 1·2·3·4·5 (생 략) | 1·2·3·4·5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2 ·3 (생 략) | 1·2 ·3 (현행과 같음) |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④. ----------**위원은**----------**재적위원수의 계산 시**----------.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 **않는다**. |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20.12.29.)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 변경 후 통합(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균등분(개인) → 개인분
-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 사업소분

### 5.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4조, 제78조, 제81조

## Ⅱ.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 ~ 제8조 주민세 세세목 변경 후 통합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기존 주민세 균등분(안 제6조)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안 제7조)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주민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사업소분 세율의 일부변경사항(안 제8조)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장 주민세**<br>**제1절 균등분** | **제3장 주민세**<br>**제1절 개인분** |
| 제6조(세율) 법 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개인의 세율<br>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br>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br>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6조(세율) 법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br>1. <삭 제><br>2. <삭 제> |
| **제2절 재산분** | **제2절 사업소분** |
|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로 한다. |
|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제7장 주민세

###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생 략)

### 제2절 개인분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 제3절 사업소분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삭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누락된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 (안 별표3)

### 5.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전국 공통 자치법규 기획정비 사항으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별표3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자중 보훈대상자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할인율) | 비 고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군수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3】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50% |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표3】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누락된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 (안 제14조)

### 5.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전국 공통 자치법규 기획정비 사항으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4조 체육시설 이용자중 보훈대상자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br>1. ~ 4. (생 략)<br>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경로대상,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등록된보훈대상자:100분의 50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br>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br>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br>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br>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br>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

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누락된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 (안 별표3)

### 5.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전국 공통 자치법규 기획정비 사항으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별표3 달성문화센터 이용자중 보훈대상자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이내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br>① ~ ② (생략)<br>③ 군수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br>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 |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50% |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 소지자 (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 |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 |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50%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 |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 |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이내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 21.6.9.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항)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 회의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제5항)

○ 간사, 서기 직책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항)

### 5.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Ⅱ.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1년 6월 9일 시행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제1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제3항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8조제5항 회의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9조제2항 간사, 서기 직책 변경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협의회의 구성을 위원 15인 이내에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안 제5조)과,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사항, 위원의 임기와 해촉(안 제6조)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달 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달성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달성군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국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업무 담당팀장
2. 위촉직 :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받는 사람, 그 밖에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협의회의 사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분기별로”를 “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의장이 지명”을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달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
|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군수---------- 달성군체육회장이 된다. |
|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 관련 전문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1. 당연직 : 달성군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국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업무 담당팀장<br>2. 위촉직 :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받는 사람, 그 밖에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

| | |
|---|---|
|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br><br>② (생 략)<br><신 설> |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② (현행과 같음)<br>③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br>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br>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br>② (생 략) | 제7조(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사무----------.<br>② (현행과 같음) |
| 제8조(회의) ① (생 략)<br>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br>③ ~ ④ (생 략)<br><신 설> |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br>② -------- 연 ----------<br>----------.<br>③ ~ ④ (생 략)<br>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

| | |
|---|---|
| |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 제9조(간사 등) ① (생 략) | 제9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 ② ---- 체육업무 담당과장----, ---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개정사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신규 설치된 생활문화센터 추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 5.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별표 신규 설치된 생활문화센터 추가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된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명칭 | 위치 |
|---|---|
| 달성군<br>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1 |
| 달성군<br>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172길 1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2조(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 ----------. |
| 【별표】 | 【별표】 |
|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명칭 | 위치 |
| --- | --- |
| 달성군<br>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1 |

| 명칭 | 위치 |
| --- | --- |
| 달성군<br>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1 |
| 달성군<br>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172길 1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 Ⅰ. 개 요

### 1. 제 출 일 : 2021년 5월 17일

###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2020. 2. 18. 이후「코로나19」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감면 대상자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인 법인

(2)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 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 감면 세목(2021년도에 한함)

(1) 재산세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 이후「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2021년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1구 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임대료 기준 : 2019년 월평균임대료(단, 2020년 최초 임대인 경우 2020년 월평균임대료)

(2) 주민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한다.

## ○ 감면 추계액 : 4.2억 원

(단위: 억 원)

| 구 분 | 계 | 주 민 세 | | | | 재 산 세 | 비고 |
|---|---|---|---|---|---|---|---|
| | |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 사업소분 (법인) | 종업원분 | 재산분 | | |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3.6 | 2.6 | 1.0 | | | | |
| 지원 의료기관 | 0 | | | | | | |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0.6 | | | | | 0.6 | |

○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3)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련공문

(1)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30(2021.2.15.)

(2)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통보 :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2647(2021.2.18.)

## Ⅱ. 검토의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동의요청 이유**는

2020. 2. 18. 이후「코로나19」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동의함에 이견은 없음.

붙임 1) 동의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1. 5. 17.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2020. 2. 18. 이후「코로나19」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출자금) 30억 원 이하인 법인

(2)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 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감면 세목(2021년도에 한함)

(1) 재산세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 이후「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2021년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1구 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임대료 기준 : 2019년 월평균임대료(단, 2020년 최초 임대인 경우 2020년 월평균임대료)

(2) 주민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한다.

## 3. 감면 추계액 : 4.2억 원

(단위: 억 원)

| 구 분 | 계 | 주 민 세 | | | | 재 산 세 | 비고 |
|---|---|---|---|---|---|---|---|
| | |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 사업소분 (법인) | 종업원분 | 재산분 | | |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3.6 | 2.6 | 1.0 | | | | |
| 지원 의료기관 | 0 | | | | | | |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0.6 | | | | | 0.6 | |

## 4.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3)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련공문

(1)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30(2021.2.15.)

(2)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통보 :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2647(2021.2.18.)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 · 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 · 적용 대상자 · 세목 ·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 · 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

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략)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8., 2019. 12. 31.>

1. 담배소매인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연탄 · 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생략)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